

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책·기획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6. 09. 29.

제 1 조(설치근거 및 명칭) 사단법인스페셜올림픽코리아(이하 “본회” 이라 한다) 정관 제35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며, 명칭은 정책·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체육계를 비롯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각계의 경험 및 학식 있는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 발전방안 심의·자문, 주요 기획사업의 기획 및 자문, 부서별 용역발주사업 심사분석 등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.

1. 본회 운영의 방향 설정
2. 본회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자문
3.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
4. 그 밖에 회장이 지시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총괄평가

제 4 조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,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본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⑤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제 5 조(위원장과 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은 주요정책을 심의한다.

제 6 조(임기) ①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7 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결정한다.

제 8 조(운영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4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 조(행정지원) 위원회의 제반 업무지원은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10조(관련부서 협조요청 등)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관련 부서 및 직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6. 09. 29.)